

kiri Weekly

2013.7.8 제241호

이슈

영국의 새로운 보험감독체계 특징

포커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 시 고려사항

금융보험 해설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5): 연금제도의 모수 - 적립률

글로벌 이슈

글로벌 제조업 경기 동향과 시사점

미국-EU FTA 추진현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영국의 새로운 보험감독체계 특징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요약

- 영국은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00)」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청(FSA)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기존 금융감독체계의 경우 2007년 노턴락사태와 금융위기 시 시스템리스크에 대해 재무성, 영란은행, 금융감독청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여 규제공백이 존재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거시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체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았음.
- 영국의 금융감독체계는 4년여의 논의기간을 거쳐 2013년 4월 1일부로 금융감독청이 전격 해체되고 건전성감독기구(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와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되었으며 영란은행 산하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가 신설되었음.
 - 금융정책위원회(FPC)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시스템리스크를 감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거, 감소하기 위한 조치 등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함.
 - 건전성감독기구(PRA)는 미시건전성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영란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개별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 증진 및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함.
 -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CA)는 PRA와 달리 독립된 회사의 형태로 모든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실시하며 PRA의 피감기관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함.
- 이러한 감독체계의 변화에 따라 영국 보험회사는 PRA로부터 미시건전성 감독을 받으며, FCA로부터 보험영업 등 업무행위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되었는데 과거와 달리 양 감독기구는 피감보험회사를 그룹핑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전적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IFA, 보험중개사 등의 판매채널은 FCA의 업무행위규제와 보험업무행위규제를 준수해야 함.
 - 영국보험협회는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감독체계가 은행중심 규제로 재편되어졌다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은행처럼 규제 및 감독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2개 감독기구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비용 부담과 추가적인 감독규정 적용에 따른 혼란발생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1. 검토배경



- 영국의 경우 2007년 노던락(Northern Rock)의 뱅크런¹⁾ 발생을 계기로 재무부, 영란은행,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 이하 'FSA'라 함)에 의해 이루어졌던 “3개 기관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함.
 - 금융감독 권한이 3개 기관에 분산됨에 따라 금융위기 발생 시 각 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여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 또한, 거시건전성 감독체계가 부재하고, 투자자와 예금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미비하였다는 지적을 받게 됨.
- 2010년 6월 George Osborne 영국 재무장관은 기존의 “3개 기관 감독체계”는 위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2012년까지 영란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집중시키고 FSA를 해산하는 감독기관 개혁안을 제시하였음.
 -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금융통합법인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이하 'FSMA 2000'라 함」은 2012년에 통과된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2)²⁾, 이하 'FSA 2012'라 함」에 의거 감독기구 부분 등이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2013년 4월 1일자로 FSA는 해체되고, FSA가 담당하던 금융감독기능은 건전성감독기구(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이하 'PRA'라 함)와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라 함)로 분리되었고, 영란은행 산하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이하 'FPC'라 함)가 신설됨.
 - PRA와 FCA는 상호협력을 해야 할 분야에 대해 MOU³⁾를 체결하였으며, 특히 PRA는 금융기관의

1) 노던락은 1965년 건축대부조합으로 시작하였고 1997년 은행으로 전환하였음. 2006년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규모 영국 내 5위, 자산규모 8위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07년 9월 초 단기차입금 만기연장의 어려움으로 영란은행에 유동성 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뱅크런이 발생함. 민재기(2008), 『Northern Rock 사태 이후 영국의 금융안정·감독기능 강화방안』, 금융감독원, p. 95.

2)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2/21/contents/enacted>.

3) 일반적인 정보공유사항, 정책과 규정 제정, 금융회사의 인가 및 대주주등 승인, 이종감독금융기관의 감독방안, 로이드보험 시장 감독, 변액보험 감독, 해외금융회사 감독, 규제절차 및 집행(formal regulatory process and enforcement), 규제실패 보고, 비인가 금융활동, 금융범죄와 사기 대응, 다른 기구와 협력, MOU 유지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http://www.fca.org.uk/static/fca/documents/mou/mou-pra.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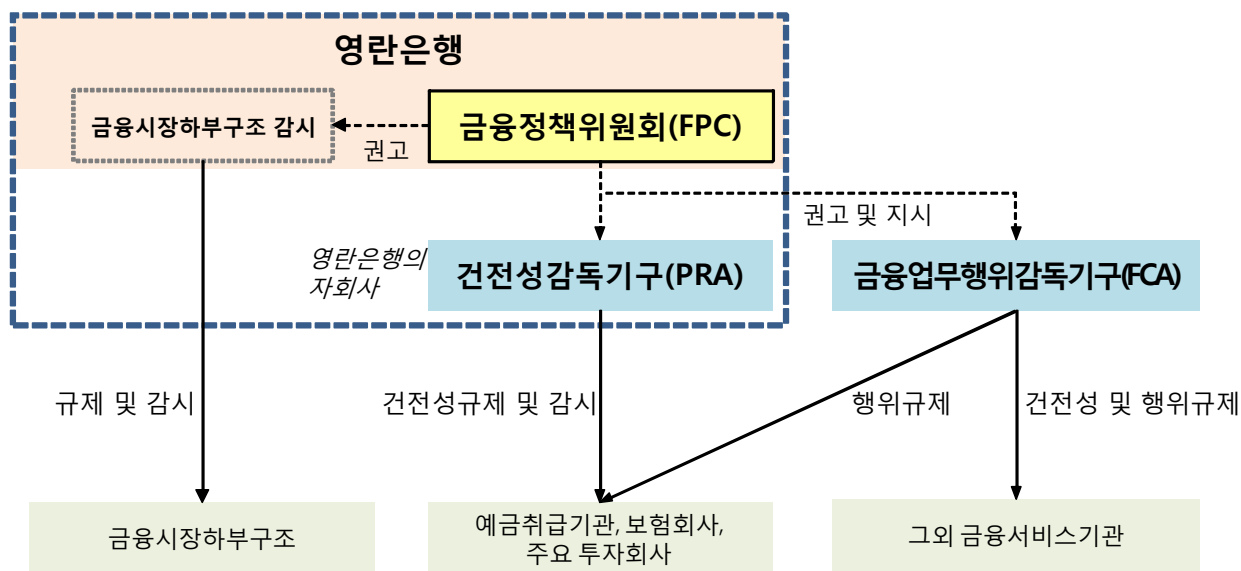
미시건전성 관련 이슈에 대해 FCA를 충분히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본고에서는 영국의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업무 분리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영국 보험업계에 대한 영향을 정리하였음.

2. 영국의 새로운 금융감독체계 특징

- 영국의 금융감독체계는 2013년 4월 1일자로 금융서비스법에 의거, 영란은행 내에 금융정책위원회가 신설되고, FSA의 감독기능은 신설된 건전성감독기구와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로 분리되었음.

〈그림 1〉 영국의 새로운 금융감독체계



주: 금융시장하부구조란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 Parties), 증권결제시스템(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결제시스템(Recognised Payment Systems)을 의미함.
 자료: BOE(2013 Q1), "Changes to the 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 p. 2.

- 영국의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는 기존 감독체계보다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며, 감독기 구별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금융정책위원회는 영란은행 내에 설치되어 거시건전성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

해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⁴⁾를 감시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FPC는 PRA와 FCA에 대해 권고나 지시를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건전성감독기구는 영란은행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미시건전성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개별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 증진 및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의 적절한 보호를 목적으로 함.
- 금융행위감독기구는 독립된 회사⁵⁾ 형태로 설립되어 모든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 및 소비자보호 규제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PRA 피감기관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 건전성 감독을 동시에 수행함.

■ 새로운 금융감독체계 하에서는 규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감독기구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 PRA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 1,700여 개⁶⁾의 예금취급기관(은행, 주택금융조합, 신용협동조합), 주요투자회사⁷⁾, 보험회사⁸⁾에 대해 미시건전성 감독을 실시함.
- FCA는 약 26,000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업무행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PRA의 건전성감독을 받지 않는 약 23,000여 개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시건전성 감독을 실시함.⁹⁾
 - FCA의 건전성감독 대상은 자산관리사(asset managers) 헤지펀드(hedge funds), 증권거래소(exchanges),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s), 금융자문가(financial advisors) 등임.

3. 건전성감독기구(PRA)의 보험감독 내용



- 4) 시스템리스크는 “금융기관 간 연계와 같은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 또는 금융 부문에서 리스크의 분산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와 “과도한 레버리지(leverage), 부채(debt) 또는 신용의 증가(credit growth)”로 규정됨. 2012 금융서비스법 9C Objectives of the Financial Policy Committee (3),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2/21/pdfs/ukpga_20120021_en.pdf.
- 5) 동 기관은 과거 FSA와 유사한 민간기업 형태로 운영비용은 금융회사로부터 감독수수료(Fee)를 받아 조달함(Fees Manual Handbook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http://fshandbook.info/FS/html/FCA/FEES>).
- 6) BOE 홈페이지(<http://www.bankofengland.co.uk/pr/Pages/default.aspx>).
- 7) PRA는 모든 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으며, 금융시스템 안정에 중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함. 현재 고려하고 있는 기준은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이 4분기 이상 연속해서 150억 파운드 이상임. ALLEN & OVERY(2013, 4),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An Overview*, p. 5.
- 8)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friendly society)을 포함하는 상호보험회사.
- 9) FCA 홈페이지(<http://www.fca.org.uk/about/what/regulating>).

■ 건전성감독기구(PRA)는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은행, 투자은행, 보험회사 등에 대한 미시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금융기관에 대해 적용하는 법규기준(Handbook)을 업무영역별로 개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PRA의 실질적인 감독업무는 시장진입허가 및 적기시정조치, 기업지배구조, 건전성 규제와 파산보호회사에 대한 계약자보호기구의 운영임.

〈표 1〉 건전성감독기구(PRA)의 감독업무

분류	감독기준(기준명칭)	감독기관 업무		
		PRA	FCA	
공통분야 (모든 금융회사와 개인에 적용되는 기준)	경영 원칙	PRIN	○	○
	고위경영자의 역할 및 내부통제시스템	SYSC	○	○
	인가요건 유지법정 기준(threshold condition)	COND	○	○
	인가기관에 대한 원리 및 실행규범	APER	○	○
	인가기관에 대한 적격성 심사	FIT	○	○
	금융안정 및 시장신뢰 기준	FINMAR	○	○
	직원 교육 및 능력배양	TC	-	○
	일반 규범	GEN	○	○
건전성 감독기준 (금융회사의 건전성 요건)	수수료 매뉴얼	FEES	○	○
	건전성 기준의 통칙	GENPRU	○	○
	건전성 규제 기준 - 은행, 주택금융조합, 투자회사	BIPRU	○	○
	건전성 규제 기준 - 보험회사	INSPRU	○	○
	건전성 규제 기준 - 모기지 및 주택금융회사, 보험중개회사	MIPRU	○	○
	건전성 규제 기준 - 양도가능증권의 집합투자 인수	UPRU	-	○
	(잠정) 건전성 규제 기준 - 공제조합	IPRU-FSOC	○	○
	(잠정) 건전성 규제 기준 - 보험회사	IPRU-INS	○	○
(잠정) 건전성 규제 기준 - 투자회사	IPRU-INV	○	○	

자료: FCA 및 PRA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http://fshandbook.info/FS/html/FCA>, <http://fshandbook.info/FS/html/PRA>).

■ PRA는 금융안정성 확보라는 “일반적인 목적(general objective)”과 더불어 보험계약자보호라는 “보험에 대한 목적(insurance objective)”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보험회사에 대한 PRA의 감독 목적은 보험회사의 안전성(Safety)과 건전성(Soundness)을 증진시킴으로써 영국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고, 적절한 보험계약자 보호방법을 확보하는 것임.
- PRA는 보험회사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며, 보험회사의 부실 발생 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급불능 시 체계적 정리절차를 통해 계약자¹⁰⁾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

10) PRA는 보험계약자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여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포함함(예를 들면, 자동차보험과 고용주책임보험의

을 수행함.

- PRA는 선제적 접근방식(forward-looking approach)을 통해 보험사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며, 신규계약 인수로 기존계약자가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되도록 않도록 총 리스크를 관리함.

■ PRA의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Prudential Sourcebook for Insurers: INSPRU)은 과거 FSA가 운영하였던 기준을 기초로 시스템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보완하여 만들어졌으며, 이에 기초하여 감독을 실시함.

- INSPRU에서는 보험회사의 요구자본량과 책임준비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그룹리스크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자기자본평가기준(Individual Capital Assessment)과 로이드 등 특수리스크전가기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PRA는 건전성이 취약한 보험회사에 대한 조기개입과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리스크평가체계(Risk Assessment Framework)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종전 FSA가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사용했던 ARROW(Advanced Risk Responsive Operating Framework)를 대체하는 제도로 파산처리의 가능성(resolvability)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평가요소로 첨가되었다는 점에서 ARROW와 큰 차이를 보임.
- 리스크평가체계는 리스크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potential impact), 주요 리스크 상황(risk context), 완화요인(mitigating factors) 등 총 3개의 요소를 감안하여 감독조치를 하도록 구성됨.¹¹⁾
 -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력(potential impact)은 금융위기와 같은 예측불가능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보험회사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함.¹²⁾
 - 리스크 상황(risk context)에서는 외부환경(external risk)과 경영리스크(business risk)가 보험회사의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함.¹³⁾

제3자 배상).

- 11) 喜田亜紀子, 石井彩子, 鈴木久子(2012), “イギリス・ドイツ・フランスの損害保険市場の動向－イギリスの金融監督規制改革とイギリス・ドイツの自動車保険におけるダイレクトチャネル－”, 「損保ジャパン総研レポート」, p. 50.
- 12)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력 평가기준은 보험회사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체성, 보험사업 이외의 금융서비스 사업의 유무, 당사자 상호연관성 등임.
- 13) 외부환경에 대한 리스크는 거시경제가 보험회사의 비즈니스모델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데, 거시경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FPC의 견해 등을 참고하여 평가함. 경영리스크는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점을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 사망률이 변화했을 때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등을 평가함.

- 리스크 완화요소(mitigating factor)는 내부통제 등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등을 고려한 운영 측면,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한 재무측면, 파산처리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측면에서 리스크 경감요인을 평가함.¹⁴⁾

〈그림 2〉 PRA의 보험회사 리스크평가체계(Risk Assessment Framework)



자료: PRA(2013, 4), “The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s approach to insurance supervision”, p. 15.

■ 또한, 보험회사의 비즈니스 연속성과 관련된 리스크의 조기발견과 파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위한 관련 기준으로 조기개입체계(Proactive Intervention Framework)를 제시함.

- 보험회사는 현재 및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근거해 1단계의 정상업무가 가능한 상태에서 5단계의 정리절차 진행까지 5단계로 분류됨.
- 또한, 각 단계마다 감독당국 개입 조치의 예를 제시하며, 2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회생(recovery)하는 경우와 정리(resolution)하는 경우를 모두 상정해 2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개입 조치를 제시함.

14) 리스크관리에 대한 평가는 리스크관리체계, 기업문화, 지배구조, 경영자의 능력 등을 평가함. 재무관점에서는 자본적정성 수준, 자본 확충 능력,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의 각종 준비금, 보험영업의 수익성, 사고 발생 시 큰 손해를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특정리스크에 관한 계약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함. 파산처리가능성의 경우 보험회사 파산 시 계약자를 보호하는 금융서비스보상기구(Financial Service Compensation Scheme)와 연계하여 조직적인 파산처리를 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표 2〉 PRA의 보험회사 조기개입체계(Proactive Intervention Framework)

감독조치단계	보험회사 상태	감독개입 조치내용	
1단계(저 리스크)	통상 업무수행 가능 회사	통상적인 감독 실시	
2단계(중 리스크)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리스크관리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회사	회생조치	회생계획 및 파산처리계획의 재평가, 리스크 요인과 규제상 필요한 자본의 재평가,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사업제한
		정리절차	초기 대응책 확인
3단계(고 리스크)	안정성과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회사	회생조치	회생계획의 보완, 이사회구성의 변경, 기존 또는 계획 중인 사업활동 제한, 자산처분, 자산매매, 자본배분의 제한, 자산증가의 제한, 신규사업 개시 취소
		정리절차	파산 시 긴급대응책 강화, FSCS와 합동하여 보상과 보험금지급계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 수집
4단계 (매우 높은 리스크)	영업면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리스크가 있으나, 시정조치를 취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의 회사	회생조치	신규사업 개시허가 취소, 회생이 필요한 조치를 단기간 내에 완료, 리스크요인 해소방안 PRA에 제출
		정리절차	FSCS와 합동하여 파산관재인 후원, 체계적 정리절차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완료
5단계(파산처리)	파산이 진행 중인 상태의 회사	파산관재인, FSCS와 합동하여 계약자 보상을 계속 수행, 파산보험회사의 잔존 시스템 감시	

자료: PRA(2013, 4), "The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s approach to insurance supervision", p. 37 및 喜田亜紀子, 石井彩子, 鈴木久子(2012), "イギリス・ドイツ・フランスの損害保険市場の動向－イギリスの金融監督規制改革とイギリス・ドイツの自動車保険におけるダイレクトチャネル－", 「損保ジャパン総研レポート」, p. 52 참조 작성.

4.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CA)의 보험감독 내용

■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CA)는 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스템 건전성 증진, 유효경쟁 촉진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행위를 감독하며, PRA의 감독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소규모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업자 등)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도 〈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함.

〈표 3〉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CA)의 보험감독업무

분류	감독기준(기준명칭)		감독기관업무	
			PRA	FCA
업무행위감독 기준 (금융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 관련된 구체적 요건)	업무행위감독기준	COBS	○	○
	업무행위감독기준: 보험	ICOBS		○
	업무행위감독기준: 모기지 및 주택금융회사	MCOB		○
	업무행위감독기준: 은행업	BCOBS		○
	고객예탁자산	CASS		○
	시장행동	MAR		○
규제절차 (FCA와 PRA의 인가, 감독, 규율 기능에 대한 설명서)	감독(감사, 통지 및 업무보고서제출 등)	SUP	○	○
	결정절차 및 패널티 부과 매뉴얼	DEPP		○
보상 (민원 및 보상 처리 절차)	분쟁해결 : 민원 처리	DISP		○
	소비자보상제도	CONRED		○
	예금자보호제도(FSCS)	COMP	○	○
특정금융기관에 관한 자료집 (개별 기업부문에 대한 지침)	주택금융조합	BSOCS	○	
	집합투자제도	COLL		○
	신용협동조합	CREDS	○	○
	전문 금융회사	PROF		○
	커버드 본드	RCB		○
	투자거래소	REC		○
상장, 사업설명서, 공시 (영국 상장규정)	상장 기준	LR		○
	공모안내서 기준	PR		○
	공시기준 및 투명성 기준	DTR		○
감독규정 지침 (특정 주제 및 회사 적용 목적)	에너지시장 참가자	EMPS		○
	정유시장 참가자	OMPS		○
	서비스 회사(투자거래 관련)	SERV		○
	기준지표 제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BENCH		○
규제 지침 (규제와 관련된 주제 대한 지침)	주택금융조합 규제 지침	BSOG	○	○
	집합투자기구 정보 지침	COLLG		○
	집행 지침	EG		○
	금융범죄 : 금융회사를 위한 지침	FC		○
	감독 범위에 관한 지침	PERG		○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급자와 유통업자의 책임에 관한 지침	RPPD		○
	불공정계약조항 규제 지침	UNFCOG		○

자료: FCA 및 PRA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http://fshandbook.info/FS/html/FCA>, <http://fshandbook.info/FS/html/PRA>).

■ FCA는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보험금 지급 등 보험회사의 업무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을 실시함.

- 금융투자형 보험상품(investment insurance)의 개발 및 판매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기준은 업무행위감독기준(Conduct of Business requirements)으로, 동 기준은 보험회사를 비롯한 모든 금

용회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됨.

- 생명보험의 보장성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은 별도로 정한 보험업무행위감독기준(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requirements)이 적용됨.
 - 동 기준에서는 보험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 광고규제, 손해사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보험중개채널은 고객에게 보상기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보험사기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FCA에 보고해야 함.

■ FCA는 보험회사와 채널의 업무행위감독 외에도 분쟁처리(Dispute Resolution: Complaints), 보험회사 파산 시 계약자보호기금 지급관련 업무, 상장관련 업무(Listing, Prospectus and Disclosure)를 맡고 있음.

- 영국의 분쟁처리(Dispute Resolution: Complaints: DISP)는 일반보험과 지급보장보험(payment protection insurance)¹⁵⁾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분쟁처리는 금융옴부즈만서비스기구(Financial Ombudsman Service)¹⁶⁾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
- FCA는 PRA의 건전성감독을 받는 보험회사를 제외한 보험관련 회사(판매채널 등)에 대해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고, 이들 기관의 파산 시 금융서비스보상기구(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¹⁷⁾를 통해 계약자 등을 보호하고 있음.

15) 지급보장보험은 은행이 개인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부가해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는 상품임. 동 상품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사고(사망, 장애, 상해, 실직 등)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미상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신용보험(credit insurance), 신용보장보험(credit protection insurance), 대출상환보험(loan repayment insurance)이라고도 함. 2012년 신규 금융분쟁건수(264,375건) 중 60%(157,716건)를 동 보험이 차지함. Financial Ombudsman Service, annual review 2012/2013(<http://www.financial-ombudsman.org.uk/publications/ar13/index.html>).

16) 금융옴부즈만서비스기구는 대체적인 분쟁처리기구로서 소비자는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운영비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함.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은행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대출, 연금, 저축 및 투자상품, 자금이체(money transfer), 금융자문(financial advice), 주식, 신탁 및 채권 등임.

17) 동 기구는 「FSMA 2000」에 근거하여 2001년 12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함(<http://www.fscs.org.uk> 참조).

5. 도입영향



- 과거 FSA 감독체계에서는 금융기관의 재량권을 중시한 반면, 새로운 감독체계에서는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감독을 수행함.
 - 새로운 감독체계 하에서는 시스템리스크로 인한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감독을 실시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등 체계 측면에서 다른 접근방법을 채택함.
 - 과거 FSA는 금융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할 경우, 장기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춘 시장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봄.¹⁸⁾
 - 새로운 감독체계 하에서는 감독기관이 많은 보험회사를 일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사의 경영진보다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감독규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보험회사의 경영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음.
 - FSA의 경우 감독기관이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나 사업모형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의 경영진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음.
- 한편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보험회사 경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도한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실제 FCA는 26,000개 금융회사를 4개 등급, PRA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감독개입조치 수준을 달리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업무행위감독구분은 <표 4> 참조).
 - 이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이 보험회사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통해 독단적인 지시를 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방식은 보험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리스크를 보험회사 스스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감독기관이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음.
 - 단, 감독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설명할 지침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보험회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18) 2009년 3월 공표된 터너리뷰(Turner Review)¹⁾에 따르면 이 같은 접근방법은 개별금융기관 감독을 중시한 반면, 전체시스템 감독이 충분치 않았으며, 내부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중시한 반면,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의 감독을 경시하고, 임원평가에 관하여 기술 평가보다 과거의 행동을 평가하였으며, 건전성 규제보다 업무행위규제를 중시했다고 비판함. FSA(2009), "The Turner Review, A regulatory response to the global banking crisis"(http://www.fsa.gov.uk/pubs/other/turner_review.pdf).

〈표 4〉 FCA의 금융회사별 감독구분 및 조치방법(업무행위감독측면)

구분	회사유형	감독접근방법	예방적 감독활동 (Firm Systemic Framework)
C1	다수 소매고객을 보유한 은행 및 보험그룹, 대규모 고객자산과 거래량(trading operation)을 보유한 유니버설은행 및 투자은행	전담감독자의 지속적 감독 실시	FCA는 기업별(firm-by-firm)로 적합한 사업모형과 전략분석을 수행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 2년을 주기로 검사)
C2	다수 소매고객 또는 대규모 도매회사를 보유한 모든 영역의 금융회사	전담감독자의 지속적 감독 실시	FCA는 공통위험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각 산업부문의 유사회사들을 그룹으로 설정 (4년 주기 검사)
C3	소매고객 또는 대규모 도매부분(wholesale presence)을 보유한 모든 영역의 금융회사	C3, C4, "Flexible Portfolio"로 분류된 회사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부터 감독을 받음(전담감독자의 감독을 받지 않음)	FCA는 각 분야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사업모형을 검사함. FCA에서 검사한 기업의 사업모형이 동류 집단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경우, 보다 심도 있는 관찰을 하게 됨. FCA의 평가는 해당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운영방식, 통제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C4	소규모 금융기관 (대다수 중개회사 포함)		고위험(high risk) 기업 전체, 평균적인 위험(medium risk)을 보유한 기업의 25%를 대상으로 면대면 인터뷰와 감독관 방문을 통한 검사를 수행함. 저위험(low risk)을 보유한 회사는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자가평가를 위한 질문서를 받음.

자료: Association for Financial Markets in Europe(2012), "UK Regulatory Reform: Briefing Note 1/12", p. 3.

■ 영국보험협회(ABI)는 새로운 감독체제가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며, 영란은행 산하기관인 PRA가 보험회사 감독을 실시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은행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냄.

- 이에 대해 영국 보험전문지 Post Magazine은 과거 보험회사는 금융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RA는 회사규모나 사업모형의 복잡성에서 은행과 차이를 보이는 보험회사에 대해 은행에 상응하는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한다고 지적함.¹⁹⁾
- 또한, ABI는 보험회사의 감독기관이 2개가 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 및 규정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²⁰⁾ **키리**

19) 喜田亜紀子,石井彩子,鈴木久子(2012), “イギリス、ドイツ、フランスの損害保険市場の動向－イギリスの金融監督規制改革とイギリス、ドイツの自動車保険におけるダイレクトチャネル－”, 「損保ジャパン総研レポート」, p. 47.
20) ABI에 따르면 새로운 감독체제의 시행으로 FCA 감독비용(Fee)은 생명보험회사가 15%, 손해보험회사가 20%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음. ABI(2013. 4), “FCA Regulatory Fees and Levies – Rates proposals 2013/14, The ABI’s response to CP 13/1”, p. 2.